

[별지 제4호서식]

## 연구활동계획 (연구주제 변경) 심의결과 통보서

「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3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.

연구단체명		
대표	의원	
연구주제		
심의결과	내용	
	결과	
기타		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

(인)

의원 연구단체 대표 귀하